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아 이 돌 보 지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연수과정을 이수토록 개정(안 제2조)

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및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로 지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다. 범죄경력조회 요청 등에 관한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사항을 정비(안 제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아이돌봄사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제2호”로, “일정 자격”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말한다”를 “갖추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이하 “자격관리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2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

3항”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봄사 자격정지(법 제32조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는 제외한다) 및 자격취소(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자격취소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격관리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의 실시 및 아이돌
봄사 자격의 부여

나.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 또는 제11조의5에 따른 아이돌봄사 또는 종사자 등의 결
격사유 확인

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 부여

4. 법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

5.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6조제1항제3호(중전의 제2호), 제12호(중전의 제9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를 “제2호의 개별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아이와 그 보호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의 2호	100	200	300
다. 법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	법 제37조	100	200	300

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의 2호			
마. 법 제11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의 3호	300	300	300
바. 법 제11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의 3호	100	200	300
사. 법 제11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의 3호	100	200	300
아. 법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닌 자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의 4호	100	200	300
자.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차.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카.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5호	100	2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2조(아이돌봄사의 자격) ----- ----- ---- 제7조제1항제2호-----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갖추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이하 “자격관리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신설>	제2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로 지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신 설>

정한다.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신 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2. (생략)

<신 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봄사 자격정지(법 제32조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는 제외한다) 및 자격취소(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자격취소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 법 제34조제3항-----
----- 아이돌봄사 -----

-----.

⑤ ----- 법 제34조제3항-----

--.

1. 2. (현행과 같음)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격관리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의 실시 및 아이돌봄사 자격의 부여

나.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

1. <u>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u> <신 설> 2. <u>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u> <신 설> <신 설> 3. ~ 8. (생략) 9. <u>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u>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u>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u>	1. <u>법 제6조 또는 제11조의5에 따른 아이돌봄사 또는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u> 2. <u>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 부여</u> 3. ----- -- <u>아이돌봄사</u> --- 4. <u>법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u> 5. <u>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u> 6. ~ 11.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12. ----- -- <u>아이돌봄사</u> ----- ② ----- ----- ----- ----- ----- ----- ----- ----- 1. -----
---	---

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u>아이돌보미</u> 양성교육	----- <u>아이돌봄사</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광역지 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u>아이돌보미</u>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3. ----- ----- ----- ----- <u>아이돌봄사</u> ----- -----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을 받은 <u>서비스제공기관</u> : 같은 조의 <u>아이돌봄서비스</u> 제공 <u><신 설></u>	4. ----- -----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u> : -----
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 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아 이돌보미의 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u> : 같은 조의 <u>아이돌봄서비스 제공</u>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연 락 처	(02) 2100 - 6310